2018년도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18년 6월 20일(수)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위 원(부총재)

임지원 위원

- 4. 결석위원 없 음

신 호 순 부총재보 유 상 대 부총재보

정 규 일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이 환 석 조사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

신 운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상 형 금융시장국장 이 승 헌 국제국장

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병 희 공보관

이 동 원 의사팀장

6. 회의경과

## <의안 제20호 -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6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6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보고서 체계는 2017년 12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금융시스템의 부문별 상황을 취약성 측면에서 점검하고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살펴보는 방식을 유지하였음. 구체적으로 이번 보고서에는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국내 시장금리 상승압력 등의 여건 하에서 가계, 기업, 금융기관의 핵심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또한 비은행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모형, 전세시장 및 대출동향, 국내 핀테크(Fintech) 현황 및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통해 금융안정 관련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였음.

이어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여러 위원들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보고서가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각 부문별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 나 개황부문에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더 강조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최근 둔화되었지만 수년간 부채 증가세가 높았다는 점, 가계부채 누증이 잠재리 스크라는 점 등을 명확히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 간 상호 연계성 부문과 관련하여 각종 수치들과 함께 그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다른 위원은 장기간의 저금리지속 등으로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므로 금융 불균형에 대한 진단을 강화하여 향후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 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한 일부 위원은 주택매매가격의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지역별 부동산시장과 가계부채를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에 대한 분석 시 금융환경의 변화, 금융기관의 행태 등 구조적인 측면에 유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이나 과다부채 기업의 증가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며 채무상환능력 취약기업의 현황뿐 아니라 업종별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일부 위원은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향후 핀테크 발전이 신용카드 회사의 수익성을 제약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한편 여러 위원들은 복원력 부문에서 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충격에 대한 복원력만 평가하고 복합 충격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금융위기 시에는 다양한 충격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향후에는 복합충격을 상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규제 변경으로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초래되었던 사례가 있었 던 점을 감안하여 규제 변경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음으로 현안분석과 관련해서 일부 위원은 비은행금융기관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충격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모형의 한계 등을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음.

일부 위원은 국내 핀테크 현황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아직 P2P 금융의 규모가 크지 않지만 과거 저축은행 사례에서와 같이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P2P 관련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전세시장 및 대출에 대한 분석에서 전세자금 대출 관련 임 차인, 임대인 및 금융기관 등의 리스크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위험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점검·평가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의 차기 현안분석 사항으로 경제 펀더 멘털을 잘 반영하는 DSR(debt service ratio)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위원은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중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이 늘어나고 있어 금융안정 관련 잠재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가계대출의 만기구조 및 차환율 등 에 대한 다양한 가정 하에 DSR에 대한 시나리오(scenario) 분석을 실시해 볼 필 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이에 대해 또 다른 위원은 DSR 추정 시 어떤 데이터와 가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추정치간 편차가 클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이를 금융안정보고서에 기술할 경우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우선 학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이에 당초 의견을 개진했던 위원은 DSR 추정치가 분석방식에 따라 어떠한지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 첨언하였음.

일부 위원은 앞선 위원의 견해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DSR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위험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 기업 구조조정, 주택공급 우위 등으로 주택매매가격의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동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아울러 국내 핀테크에 대해서는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 및 금융기관의 관련 투자확대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기업부채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혁신성장 등을 위해 금융중개기능 효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덧붙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현재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잠재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먼저 가계대출 증가세가 정부대책의 영향으로 최근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출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연히 둔화된 반면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가계대출 수요를 새롭게 유발하는 요인과 금융기관의 거래유인 구조에 대해 분석해 볼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다음으로 기업대출과 관련하여 한계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잠재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과다부채 기업과 이자

보상배율 1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간 중소기업대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들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 안으로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등 과거 금융위기 상황을 적용하여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안정보고서의 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안정 이슈 분석 시 데이터의 한계나 국제적으로 명확한 이론 및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학계에서 논의되는 사항 등을 계속 지켜보면서 연구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음.

##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6월)(안)(생략)